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4. 22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숙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4월 9일
-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3. 개정이유

2018. 3. 27. 개정된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2018.9.28.부터 시행됨에 따라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가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(현행) “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”
(변경) “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”로
- 명칭 “성별영향분석 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2018년 3월 27일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,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